

# 한국 법률 속 일본어식 표현 연구: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로 인하여’를 중심으로

양진철\*

## I. 서론

이 논문은 한국의 현행 민법 총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번역투 표현인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로 인하여’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 문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위 표현들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모두 일본어에서 ‘후치사 표현’이라 불린다.<sup>1)</sup> 조사와 동사의 활용형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법 단위처럼 쓰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들은 현재 한국어에서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어에서 건너온 표현으로서 한국어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굳더더기 표현이라는 지적<sup>2)</sup>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사격 조사+1음절 한자 어근+하+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음절 한자가 우리말에서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sup>3)</sup> 더욱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언어 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있지만 다른 문화권과의 접촉으로 언어가 변하기도 한다.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고어로부터의 차용어가 생겨났고, 개화기에는 많은 신문물이 들

---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부 졸업

1) 이경규, 오경순(2011: 104).

2) 오경순(2010), 이희재(2009) 등 번역을 다루는 책에서 주로 지적한다.

3) 안예리(2013: 107)에 따르면 ‘1음절 한자어+하다’는 과거에 널리 쓰였으나 20세기 이후 수가 급격히 줄어서 현재는 그 수가 적다고 한다.

어오면서 여러 단어들도 함께 생겨났다. 현대에 들어서는 급속한 세계화로 다른 문화와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에서 외국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것도 ‘스마트폰’이고, 이 글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되고 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서 영향을 받을 때, 단순히 새로운 대상과 함께 단어만 수입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어보다 큰 단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관용 표현이 통째로 들어오기도 하고 문형 구조가 바뀌기도 한다. 특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의 문장 구조에 우리말을 끼워맞추다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말과는 이질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이렇듯 원어의 표현이나 구조에 충실하여 우리말처럼 느껴지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흔히 번역투라고 한다.

번역투의 개념과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경순(2010: 27)은 번역투를 ‘원문 구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투를 ‘외국어스러운’ 표현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번역투가 반드시 ‘번역문’에만 나타난다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우리말로 만든 문장에서도 번역투가 등장하여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투를 경계하고, 현행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sup>4)</sup>에서도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교정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투가 단점만 지닌 것은 아니다.<sup>5)</sup>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5) 오경순(2010: 36)은 번역투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순기능	역기능
목표 언어의 부족한 어휘 체계 보완	목표 텍스트의 질 저하
목표 언어 문체의 다양화에 기여	가독성 및 이해력 저하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	목표 언어의 다양한 표현 기회 저해
번역 교육의 살아 있는 자료	목표 언어 어휘 체계 구조 왜곡, 비속화
	목표 언어의 정상적인 발달 저해
	언어 사대주의 의식 심화

우리말에는 그동안 없던 표현 방식이 외국어를 빌려서 생겨난다면 참신하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 더 쉽고 간결한 표현이 있는데도 번역투를 사용한다면 번역투가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 이므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번역투의 허용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다. 문학 작품과 같은 문예적인 글에서는 전략적으로 번역투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투를 널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문서나 언론 기사와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텍스트는 그 공공성 때문에 정확하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번역투를 최대한 지양하고 더 쉬운 표현을 찾는 것이 좋다.

법률 문장도 공공 언어의 한 종류로서 번역투보다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법률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률 문장은 난해하게 구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휘 차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난해한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고 문법 차원에서도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일본어 번역투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주요 법률이 일본 법률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제체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여기서는 정비기준으로 ‘자연스러운 법령’이란 주제 하에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sup>6)</sup> 그러나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법률 문장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래로 큰 개정 없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듯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 민법 문장을 그대로 한국어로 직역한 문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 문장에서 번역투 표현의 용례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6) 법제처 발간물 ‘알기 쉬운 법령 백서’.

물론 전술하였듯이 번역투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의 공공언어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번역투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번역투 표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번역투 표현의 사용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 번역투 표현이 법률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여 더 나은 법률 문장을 고안하고자 한다. 즉 이 논의는 번역투 표현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보고 올바른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성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sup>7)</sup> 번역투 표현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문법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문법성이 높은 법률 문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많은 번역투 표현 중에 ‘-에<sup>8)</sup>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로 인하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법률 문장에서 이러한 번역투 문장에 고유의 기능을 부여할 정도로 이를 표현이 필수적인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더 간결한 한국어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2장에서는 이를 표현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개별 표현별로 이들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 II. 일본어 후치사 번역 표현의 특성

### 1. 선행 체언별 특성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로 인하여’는 모두 부사격 조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체언을 취한다. 각 표현별로 선행하는 체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이를 후치사 표현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sup>9)</sup>

7) ‘문법성의 정도’ 개념은 장소원(2009: 3)을 따른다.

8) 부사격 조사로 ‘에’ 대신에 ‘에게’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 대하여’를 다룰 때 함께 다룬다.

우선 ‘-에 대하여’의 선행 체언을 최초로 등장하는 순서대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팔호 안의 숫자는 등장 횟수이다.

사람(3), 행위(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자(3), 재산관리인(2), 제3자(3), 법인(1), 채권자(3) 채권(1), 재산(1), 주무관청 또는 총회(1), 본인(3), 상대방(1), 대리인(1), 쪽(1)

민법 총칙편에서 ‘-에 대하여’는 총 30번 쓰였는데 선행 체언의 종류는 모두 15가지이다. 각 단어 당 평균 2번 등장하였으므로 언뜻 보면 선행 체언이 다양하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종류는 제한적이다. 명사 ‘사람’ 이외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자, 재산관리인, 제3자, 채권자, 본인, 상대방, 대리인’ 모두 어떤 특성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상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인(人)’이나 ‘자(者)’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에서 사람처럼 취급하는 단위이므로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 볼 수 있고 ‘쪽’은 해당 조문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리킨다. ‘주무관청 또는 총회’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모인 집단으로서 사람과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모두를 포함하면 ‘사람’을 가리키는 체언이 30번 중 총 24번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에 대하여’는 선행 체언의 제약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에 관하여’는 사용 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민법 총칙편에서는 총 18번 쓰였는데 선행 체언으로 다음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민사(1), 영업(1), 행위(3), 관리(1), 반환(1), 직무(1), 정수(1), 사무(1), 대표(1), 사행(2), 집행(1), 의사(1), 채권(1), 표시(1), 사정(1)

등장한 선행 체언의 종류는 총 15가지로 ‘-에 관하여’가 18번 쓰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표현이 선행체언을 비교적 다양하게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 ‘법률행위’와 같은 합성명사는 뒤의 명사만 계산한다.

‘-에 의하여’는 총 43번 사용되었다. 네 가지 표현 중 가장 많이 쓰였다. 선행 체언은 다음과 같다. 종류는 15가지이다.

청구(18), 규정(10), 의결(1), 결의(1), 방법(1), 평가(1), 용법(1), 행위(3), 지명(1), 종료(1), 사기강박(1), 역(1), 판결(1), 절차(1), 것(1)

명사 ‘청구’가 18번 쓰여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명사 ‘규정’은 10번 쓰여서 20% 남짓한 비중을 보인다. 나머지 명사들은 고루 사용되었는데 의존명사 ‘것’이 사용된 것이 특이하다.

(1)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명사 ‘청구’ 이외에도 ‘의결, 결의, 평가, 행위, 지명, 판결’ 등 동작성 명사들이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명사가 쓰일 때는 N2의 동작주에 해당하는 N1이 관형격 조사 ‘의’를 취해 관형어로 와서 ‘N1의 N2에 의하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에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의 동작주에 해당한다.

(2)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로 인하여’는 총 18번 사용되어서 ‘-에 관하여’와 마찬가지로 사용 횟수가 적은 편이다. 선행 체언은 다음과 같다.

이(2), 행위(2), 결원(1), 무경험(1), 것(1), 과실(2), 성취(2), 사유(2), 청구(2), 아니함(2), 사변(1)

11가지 체언이 비교적 고르게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명사 ‘이’도 사용되었다. ‘아니함’은 엄밀히 말하면 체언이 아니라 동사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나 뒤에 ‘-로 인하여’를 취하므로 여기에 포함했다. 또한 (3ㄴ)과 같이 선행 체언 대신 명사절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ㄱ.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ㄴ.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민법 총칙편에서 이들 후치사의 사용 빈도 면에서는 ‘-에 의하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행명사로 ‘청구’와 ‘규정’이 전체 쓰임의 60%가 넘는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전형적인 법률 표현임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에 대하여’는 선행 체언으로 사람만을 요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 2. 문장 속 기능별 특성

일본어 후치사 번역 표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들 표현이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를 분석하면 된다. 우리말의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7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법률 문장에서 독립 성분이 쓰일 일이 없으므로 독립어로 쓰이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고, 학교 문법을 따르자면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가’를 취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X하여’가 보어로 쓰일 수도 없다. ‘X하여’를 서술어로 본다면 이를 포함하는 전체 법률 문장을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서는 선행 명사가 전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보고자 하므로 서술어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X

하여’의 선행 체언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문장에서 ‘X하여’가 하는 역할 알면 그 역할에 맞는 조사를 사용하여 더 쉽고 간결한 표현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안할 수 있다.

민법 총칙편에서는 ‘X하여’의 선행 체언이 전체 문장의 주어나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목적어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에 대하여’와 ‘-에 관하여’에 있다.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에서 ‘사람’은 ‘심판을 하다’의 목적어가 되고,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에서는 ‘채권’은 ‘변제하다’의 목적어가 된다.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에서 ‘사항’은 ‘결의하다’의 목적어이고,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하여야 한다’에서 ‘채권’은 ‘변제하다’의 목적어가 된다.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사어로 쓰인다. ‘-에 대하여’와 ‘-에 관하여’는 주로 공간 부사어<sup>10)</sup>로 쓰이고 ‘-에 의하여’는 주로 과정 부사어 중 수단에, ‘-로 인하여’는 주로 과정 부사어 중 까닭에 대응된다.

특정한 문장 성분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위의 경우는 선행 체언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와 문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특정한 격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에 대하여’, ‘-에 관하여’에 그러한 경우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에 대하여’와 ‘-에 관하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표현별 사용 실태와 개선안

II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어 후치사 번역 표현이 각각 민법

---

10) 이하 부사격 조사의 분류는 서정수(2006)를 따른다.

총칙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해보고 보다 나은 법률 문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 '-에 대하여'

'-에 대하여'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른 표현과는 달리 선행 체언의 제약이 심하다는 데에 있다. 전술하였듯이 민법 총칙편에서 '-에 대하여'의 선행 체언으로는 대부분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가 오는데 이것은 동사 '대하다'의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 '대하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을】 【(…과)…을】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마주 향하여 있다.

¶ 그는 벽을 대하고 앉아서 명상에 잠겼다. || 나는 어머니와 얼굴을 대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자리를 피했다. ||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지도 꽤 오래되었다.

「2」 【…에/에게 -게】 【…을 …으로】 【…을 -게】 ((‘…으로’나 ‘-게’ 성분은 ‘…처럼, -은/을 듯이’ 따위의 부사이나 ‘-이/히’ 부사로 대체될 수 있다)어떤 태도로 상대하다.

¶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그 여자는 특히 잘생긴 남자 사원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다/나는 회사에서 그분을 상급자가 아닌 형님으로 대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다. || 점원은 손님을 친절히 대한다./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손하게 대하여야 한다.

「3」 【…에】 ((‘대한’, ‘대하여’ 꼴로 쓰여)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강력 사건에 대한 대책/건강에 대하여 묻다/신탁 통치안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대 운동은 전국적이었다./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장관이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4」 【…을】 작품 따위를 직접 읽거나 감상하다.

¶ 이 소설을 처음 대하는 독자는 다소 당황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4가지의 의미 중 1번과 2번의 의미는 '사람'과 어울리기 쉽다. 1번은 '마주하다', 2번은 '상대하다'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번은 상대방이 전제되기 때문에 유정명사와만 어울린다. 그러나 3번의 뜻을

보자면 굳이 ‘대하다’가 유정명사와만 어울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법률 문장에서 주로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은 ‘대하다’가 조사와 위치로 평가할 정도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에 대하여’가 법률 문장에서 기능 표지로 자리 잡지 않은 것이고 이 표현을 굳이 인정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2.2에서 검토하였듯이 ‘-에 대하여’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행 체언이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표현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대하다’의 의미 중 3번과 연결된다.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남기심, 고영근, 2011:265)이기 때문이다. 3번의 예시문장도 타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에 대하여’의 선행 체언이 모두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다.<sup>11)</sup>

민법 총칙편에서 ‘-에 대하여’가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5) ㄱ.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ㄴ.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ㄷ.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ㄹ. 제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

11) 목적격조사로 목적어를 표시하면 각각 ‘건강을 묻다’, ‘신탁 통치안을 반대하다’, ‘문제를 토론하다’, ‘사건을 책임지다’가 된다.

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 ㅁ. 제14조의 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ㅂ. 제14조의 3(심판 사이의 관계)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ㅅ.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에 대하여'를 목적격조사로 대체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선 (5ㄷ)은 목적격 조사를 이용하면 '행위를 동의를 할 수 있다'가 되어 자연스럽다. (5ㅅ)은 목적격 조사를 써도 자연스러우나 원래 '대하여' 뒤에 보조사 '도'가 쓰인 문장이므로 보조사만 쓰면 된다.

(5) ㄷ'.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ㅅ'.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5)의 나머지는 모두 '사람을 심판을 한다'의 구조이다. 여기서 '-에 대하여'를 '을'로 대체하게 되면 목적어가 두 번 겹쳐서 일종의 이중 목적어 구문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그것의 한 종류, 또는 그 수량을 나타낼 때 이중 목적어가 쓰여서(남기심, 고영근: 267) 그러한 경우에는 이중 목적어가 자연스러우나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X를 하다'가 실제로는 하나의 동사 'X하다'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이를 목적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서술어로 본다.<sup>12)</sup> 'X를' 앞에 오는 목적어가 'X(를)하다'의 목적어가 되므로 전

12) 'X를 하다'를 'X하다'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송창선(2009: 307)을 따른다.

체적으로 목적어가 하나가 되어 부분, 종류, 수량이 아닌데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5-ㄷ)은 ‘동의하다’에서 ‘동의를 하다’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이중 목적어 구문이 된다. 그러나 (5-ㄷ)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심판을 하다’가 하나의 서술어 단위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 앞에 관형어가 선행하여 관형어와 명사 ‘심판’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술어 단위 ‘심판하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심판’과 서술어 ‘하다’가 결합한 두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5-ㄱ')에서와 같이 ‘심판’ 앞에 관형어가 없다면 [사람을 [심판(을) 하다]]가 되어 자연스럽다. 그러나 관형어 때문에 ‘심판’과 ‘하다’가 먼저 결합되지 못하고 ‘성년후견개시’와 ‘심판’이 먼저 결합하고 나중에 ‘하다’가 결합하면 (5-ㄱ")과 같이 [사람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다]]가 되는데 이는 ‘X를 하다’ 구문에서 ‘X를’도 ‘하다’의 목적어로서 기능하여 실제 목적어가 ‘사람’과 ‘심판’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심판’의 대상일 뿐 ‘심판’이 ‘사람’의 부분이거나 종류이거나 수효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리하게 ‘-에 대하여’를 목적격 조사 ‘를’로 바꾸어서 이중 목적어를 만들기보다는 ‘대하여’가 가지고 있는 3번 의미를 활용하여 그대로 ‘-에 대하여’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5) ㄱ'.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한다].
- ㄱ".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에 대하여’는 대부분 부사어로서 기능한다. 이때는 공간 부사어로서 ‘관계 대상’의 의미로 쓰이는데, 유정명

사 뒤에서는 ‘에게’, 무정명사 뒤에서는 ‘에’로 대체하면 자연스럽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만 예를 들면, (6-1)의 ‘재산관리인’은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에게’를 쓰면 되고, (6-2)의 ‘법인’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에’를 쓰면 된다.

- (6) ㄱ.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채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채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ㄴ.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ㄴ'.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단, 특정한 격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4) ㄱ.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ㄴ'.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때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가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 ‘-에 대하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에 대하여’ 대신에 보조사 ‘는’을 쓰면 자연스러운데 보조사 ‘는’이 주제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부사격조사로 ‘에’ 대신에 ‘에게’를 쓴 경우가 민법 총칙편에 세 조항이 있다. ‘-에게 대하여’는 쓰임이 매우 제한적인데, 민법에서는 총칙편에서만 세 조항에서 사용되었고 다른 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세 조항에서 ‘-에게 대하여’ 선행 체언은 모두 유정명사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형법에서는 ‘-에게 대하여’가 사용된 조항이 아예 없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

어 보면 ‘-에게 대하여’가 ‘-에 대하여’와 다른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선행 체언이 유정명사라는 점에 이끌려 조사 ‘에’ 대신에 ‘에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7)의 경우에는 모두 부사격조사 ‘에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에 대하여’의 선행 체언으로 유정명사가 오는 경우와 같은 구조이다.

- (7) ㄱ.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ㄱ'.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ㄴ.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ㄴ'.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다만, (8)의 경우는 (7)과는 다르다. 조문의 의미상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책임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을 말하고 있다. 이때 ‘-에게 대하여’를 ‘에게’로 대체하면 조사 ‘에게’의 의미상 책임의 소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에게’로 대체할 수 없고, ‘대상’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에게 대하여’를 그대로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문을 ‘-에게 책임을 진다’로 아예 바꾸면 ‘-에게 대하여 책임이 있다.’를 쓸 때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이 된다.

- (8) ㄱ.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ㄱ'.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2. '-에 관하여'

II장에서 검토한 대로 '-에 관하여'는 선행 체언이 특별한 제약 없이 널리 쓰인다. 선행 체언이 여러 종류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에 관하여'가 고유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관하여'의 '관'의 한자 '關'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 때문에 '-와 관련 있는 사항'이라는 '관하여'만의 고유한 의미가 생겼을 것이다.

'-에 관하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모두 목적격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9) ㄱ.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ㄱ'.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ㄴ.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ㄴ'.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ㄱ)에서 '결의하다'의 목적어가 '통지한 사항'에 해당하고 (9-ㄴ)에서 '변제하다'의 목적어가 '채권'이므로 굳이 '-에 관하여'를 쓰지 않고 목적격 조사 '을'을 쓰면 된다. 다만 위의 두 경우는 '-에 대하여' 뒤에 보조사가 붙어 있는데, 목적격 조사 '을'은 보조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원래 '대하여' 뒤에 쓴 보조사만 써서 각각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에 관하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부사격 조사 '에'나 '에서'로 바꿀 수 있다. 모두 공간 부사어로서 처소의 의미로 사용된다. (10-ㄱ)은

처소, (10ㄴ)은 추상 대상의 경우이다. 조사별로 하나씩 예를 든다.

- (10) ㄱ.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ㄱ'.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서는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ㄴ. 제22조(부채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채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ㄴ'. 제22조(부채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채 중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에 관하여’가 고유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만큼 특정한 문장 성분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몇몇 있다.

- (11) ㄱ.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 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ㄴ.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ㄷ.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ㄹ.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쾌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관하여’가 어휘적 의미를 가져서 ‘그와 관련 있는 사항’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에 대하여’에서 특정한 문장 성분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조사 ‘는’을 쓰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선행 체언을 주제화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나 반드시 ‘는’을 쓸 필요는 없다.

### 3. '-에 의하여'

'-에 의하여'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부사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격 조사 '로(씨)'로 대체할 수 있다.

- (12) ㄱ.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ㄴ.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2.1에서 보았듯이 '-에 의하여'가 선행 체언으로 동작성 명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단순히 조사만 사용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청구, 의결, 결의, 평가, 행위, 지명, 판결'과 같은 동작성 명사를 보면, 이를 명사의 동작주가 관형어로 앞에 오는 경우가 많다. 'A의 B에 의하여' 형태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 문장에서 명사화 구성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나친 명사화 구성은 한국어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구성으로서 지양되어야 한다.<sup>13)</sup> 그러한 예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선행 명사별로 대표적인 예문 하나씩을 든다.

- (13) ㄱ.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ㄴ.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13) 법률 문장의 지나친 명사화는 김동욱(2004), 장소원(2009), 홍사만(2004) 등에서 그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ㄷ.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ㄹ.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갚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ㅁ.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ㅂ.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ㅅ.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 중 (13ㄴ), (13ㄷ)은 ‘의하다’가 본동사로 쓰인 경우이므로 다른 경우와는 문장 구조가 다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sup>14)</sup> (13ㅁ)은 주어가 ‘지명하다’의 주체가 일반인이므로 주어가 생략되었고 (13ㅅ)은 ‘판결하다’의 주체는 당연히 법원이므로 주어가 생략되었다.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동작주어 관형어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성은 명사화된 구성이기 때문에 절로 풀어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13ㄱ)과 같은 구성은 ‘~가 청구한 바에 따라서’로 풀어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한 내용을 고려하여 심판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히 표현된다.

- (13) ㄱ'.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한 바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4) 이 경우는 한국어에서 ‘의하다’가 서술어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장소원, 2009: 17)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본동사로 쓰이기 어려워서 표현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본고의 주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술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에 의하여’를 아예 ‘-를 따라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 의하여’를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으로 대체했을 때 뜻이 통하기도 한다. 법률 문장에서는 ‘-에 의하면’의 앞에 나오는 상황이 갖추어지면 뒤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3b)의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는 ‘본인이 지명하여’로 연결어미로 원인의 뜻을 나타내면 더 간결하다. (14ㄱ)는 연결어미 ‘-어/아’를 사용하여 (14ㄱ')으로 바꾸면 더 자연스럽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에 의하여’와 뒤에 나오는 ‘-로 인하여’가 병렬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에 의하여’를 ‘-하여’로 바꾼다면 뒤의 ‘-로 인하여’도 같이 ‘-하여’로 바꾸어야 한다. 이때 ‘-에 의하여’만 연결어미로 바꾸고 뒤따르는 ‘또는’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두 절을 ‘-거나’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3) ㄱ”.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ㅂ’.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②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4) ㄱ.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ㄱ’.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치분은 권리자가 청구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ㄱ”.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치분은 권리자가 청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4. ‘-로 인하여’

‘-로 인하여’는 그 의미가 비교적 분명하다. 한자 ‘因’을 쓰기 때문에 ‘-로 인하여’는 결국 선행 체언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우리말에

서 부사격 조사 ‘로’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부사격 조사 ‘로(씨)’만 쓰면 족하다.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존명사 ‘때문’을 사용해도 자연스럽다.

- (15) ㄱ.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ㄱ'.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ㄱ".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행 체언 앞에 주어에 해당하는 관형어가 오는 경우에는 ‘-에 의하여’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절로 풀어써도 자연스럽다. (16)는 ‘조건’이 ‘성취되다’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절로 풀어쓸 수 있다.

- (16) ㄱ.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ㄱ'.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이 성취되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로 인하여’는 앞에 절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 (17) ㄱ.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ㄴ.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로(씨)’만 써서 ‘아니함으로(씨)’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명사화 구성을 피하여 ‘아니하여(서)’로 대체해도 자연스럽다. 연결어미 ‘-어(서)’ 만으로도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17) ㄱ'.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ㄴ'.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로 인하여’는 ‘이’라는 대명사가 선행 체언으로 온 경우가 있다. (18)은 ‘-로 인하여’ 자체가 잘못 사용된 예이다. 여기서 ‘이’는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 내용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로 인하여’를 ‘이것으로’로 바꾸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이때 부사격 조사 ‘으로’가 수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수단으로써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8) ㄱ.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ㄴ'.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것으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IV. 결론

지금까지 일본어 후치사 번역 표현이 민법 총칙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선행 체언의 종류를 조사하여 ‘-에 대하여’는 사람과 주로 어울리고 ‘-에 의하여’는 동작성 명사를 선행 명사로 취할 때 그 앞에 관형어로 동작성 명사의 주어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았다. 전체 문장에서는 이들 표현이 목적어, 부사어로 쓰였고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에 대하여’는 어원의 특성상 선행 체언으로 사람이 주로 오는 제약이 심했고, 선행 체언은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과 공간 부사어 역할을 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각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선행 체언이 관형어의 수식을 ‘-에 대하여’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에 관하여’는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에 관한 사항’이란 의미를 가질 때에는 그대로 살리거나 보조사 ‘는’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 의하여’는 모두 부사어로 쓰여서 부사격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선행 체언의 앞에 행위자에 해당하는 명사가 관형어로 올 때는 명사화 구성을 피하여 절로 풀어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인하여’는 모두 부사격 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선행 체언 자리에 명사절이 올 때는 전체를 절로 풀어쓰고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글에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민법 총칙편에서 이러한 일본어 후치사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표현들이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인다기보다는 일본 법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남은 번역투의 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나친 명사화는 독자들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 언어로서 법률 문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군더더기를 줄이고 복잡한 구성을 지양함으로써 더 나은 법률 문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사전 및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법제처.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2. 논문 및 저서

- 김동욱(2004),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51, 411-430.
- 남기심, 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 송창선(2009), 「이른바 ‘이중 목적어 구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44, 301-320.
- 서정수(2006), 『국어문법, 수정판』, 한세본.
- 안예리(2013),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학』 58, 107-133.
- 오경순(2010), 『번역투의 유혹』, 이학사.
- 이경규·오경순(2011), 「일본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93-117.
-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 장소원(2009),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텍스트언어학』 27, 1-29.
- 홍사만(2004),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표현(1) – 명사구 표현」, 『어문논총』 41, 57-98.